

항공·관광업계와 함께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 고용노동부, 4.27.(월) 중동전쟁 대응 항공·관광업 현장간담회 개최
- 위기징후 포착시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매출액 감소 없이도 지급), 특별고용지원업종 요건 개선 및 신속 판단 등 대응방안 검토·시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월), 김포공항에서 항공·관광업계*와 함께하는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관광업계의 업황 및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서울시관광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항공사 8개소(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파라타항공) 참석

항공업계는 현재까지는 항공 수요 감소폭이 제한적이지만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손실 부담,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인한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에서 무급휴직 신청을 접수하고 신규채용을 보류하는 등 고용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전방위적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업계 또한 주요 여행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무급·유급휴직 실시를 고려 중으로, 향후 유류할증료 급증이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업계 전반의 고용불안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 기준 항공 유가에 따라 33단계로 부과: 3월 6단계 → 4월 18단계 → 5월 33단계

이 날 간담회에서 항공·관광업계는 함께 앞으로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 및 훈련비 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비용 부담 경감도 요청하였다.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항공·관광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①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항공·관광업계의 고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경우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업종* 확대를 검토한다. 요건이 완화된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종 상황의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오는 5월 12일부터 휴업·휴직으로 구분된 지원유형을 단일유형으로 통일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하는 등 지원금 신청에 있어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참고1}.

* ▲ 원유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 ▲ 중동전쟁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수출 사업주에 대해 요건 기 완화

- ② 다음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도 신속히 검토한다. 지난 13일 장관 주재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고용충격 적시 포착, 일용직의 고용상황 반영 등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 중^{참고2}에 있다.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별 협회 등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관련 고시 행정예고(~4.30) 등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 예정

**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상향(우선지원1일 6.8만원→7만원), 사업주 훈련지원한도 상향(납부보험료의 100%→130%),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6개월) 등 지원^{참고3}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도 소홀함 없이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2.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요건 개선(안)
3. 특별고용지원업종 세부지원내용
4.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서기관	장지훈 (044-202-7027)
			사무관	김진영 (044-202-7028)
			사무관	차정환 (044-202-7032)



참고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대상) 고용유지기간 및 이후 1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내용) 사업주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

* 단, 무급 지원유형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지원금은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구분	지원수준	지원한도	지원기간
유급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2/3* *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9/10	일 6.8만원	연간 최대 180일
무급	평균임금의 50% 내 결정 금액	일 6.8만원	재직기간 중 최대 180일

- (제도 개편 내용) 지원 유형 및 요건을 통일(2026. 5. 12.부터 시행)

구분		현행	개정 후
유급	휴업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
	휴직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무급	휴업	① 30일 이상 휴업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해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	① 무급휴직 시작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휴직 ② 30일 이상 휴직 ③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참고 2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량요건 개선(안)

□ 정량요건 산정기간 단축: 직전 12개월 → 직전 6개월

- 지표 산정기간 단축을 통해 단기적 충격이 희석·분산될 가능성을 낮추어 지표 민감도 제고, 고용충격 적시 포착

전	후
①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①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 이상 저조
②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② 직전 6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③ 직전 12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③ 직전 6개월간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④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④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범위(이직사유)에 ‘일용직’의 회사사정 사유 추가

- 상용직보다 상대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 일용직의 “회사사정” 사유^{코드1}로 인한 구직급여 신청도 포함

* (변경 전) 구직급여 신청자 요건 판단 시 코드 22, 코드 23로 인한 신청자만 판단
(변경 후) 코드 1로 인한 신청자도 판단범위에 추가

〈 피보험자격 상실(이직) 사유 〉

상용노동자 (+예술인·노무제공자 포함)	일용노동자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22. 폐업·도산(예정포함), 공사 중단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26.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또는 계약해지·파기	1.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개인사정,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노무제공종료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개인사정, ▲노무제공종료 등

참고 3

특별고용지원업종 세부지원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8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8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1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직)	지원요건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 이상 유급휴직 (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15~55%	- 5년간 훈련비 5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률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 해도 가능
	생 계 비 대 부	- (요건) 가구원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한도) 1명당 1천만원		- (요건) 소득요건 무관 - (한도) 1명당 2천만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6개월)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3개월)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자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소득요건 면제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3인 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6년 월 268만원)		4인 가구 중위소득 1/2 이하 (‘26년 월 325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 (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총 2천만원		총 3천만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6년(거치 1년~2년/상환 3~4년)		최대 8년 (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 등을 정규직 채용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1인 이상 기업도 지원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신
박종흠 한국항공협회 상근부회장님,
박종달 한국관광협회 상근부회장님,
조태숙 서울시관광협회 회장님,
황준석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님,
최정호 대한항공 영업 총괄 부사장님을 비롯하여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파라타항공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동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항공·관광업계의 어려움을 문서로만 살필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생존위기에 놓였던 항공업계와 관광업계는
이번 중동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의 불안감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과 함께
유류할증료 급증에 따른 여름철 항공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일부 저비용항공사에서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고,
채용계획을 보류·연기하는 등 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 또한 주요 여행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무급·유급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유류할증료 급증으로 여행수요가 위축되는 경우에는
업계 전반으로 고용불안이 확산될 것이 우려됩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긴밀한 협조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존 제도의 틀에 현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항공·관광업계 전반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주요 고용지표의 실시간 점검과 동시에
지방관서 현장지원반을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통제에 잡히지 않는 현장의 고충을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업종을 확대하여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신청 편의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5월 12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유형을 단일화하고,
지원 요건을 개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량 요건뿐 아니라,
산업·경기·고용실업 상황 및 대규모 고용감소 여부 등
정성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직업훈련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인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마주할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건의가 아니라,
현장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호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
하나하나 새겨듣고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항공, 관광업은 K-컬처를 확산하는 우리 경제의 교두보이자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터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기 제신
모든 분들께서 항상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